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6년 제3차 직원 채용 공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성평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함께 일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코드	채용분야	직무내용	고용형태	임용직급	인원(명)	근무기간
01	가족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지원 - 아이돌봄중앙지원사업 문의 응대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사업 문의 응대	계약직	청년인턴	5	26.10.1.~12.31. (3개월)

■ 근무조건

- 근무지: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1층
- 근무시간: 월~금요일 09:00~18:00
- 급여수준: 기본급 월 215만원 수준(중식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별도)

■ 지원자격

기본 자격

- 거주지,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청년고용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응시연령 상한 연장 가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1. 부정합격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기관은 면접 대상자에게 ‘임용결격사유부존재확인서’를 징구합니다. 허위 기재 및 은폐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추후 어떠한 형태로든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예외 없이 임용이 취소되며 향후 본 기관 채용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2 전형 내용 및 우대사항

■ 전형절차 및 일정

온라인 서류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일
8. 21.(금)~ 9. 3.(목) 까지	9. 11.(금)	9. 15.(화)	9. 28.(월)	10. 1.(목)

- 면접전형의 자세한 시간 및 장소는 대상자에 한 해 개별 안내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에게는 면접전형 시 필요한 편의가 제공됩니다.
- 학업 등을 이유로 한 임용 유예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www.kihf.or.kr)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 전형별 합격기준

- 서류전형

구분		배점	내용
서류전형	정량평가	30	NCS 기반 직무경력
		7	해당 분야 학교교육 이수
		3	해당 분야 직업교육 이수
	정성평가	20	직무수행경험
		20	직무수행계획
		20	지원동기 및 포부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를 선발하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 가산점을 포함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면접전형

구분	배점	내용
면접전형	100	경험·상황 면접

- 가산점을 포함한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서류심사 고득점자

■ 우대사항

- 우대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대 10점까지 가능합니다.

우대대상자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에우대지원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한 취업 지원 대상자	법률에 따름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서류·면접전형 10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서류전형 2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2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	서류전형 2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2점
경력단절여성	「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 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혼인, 임신,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서류전형 2점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3개월 이상 유경험자	서류전형 1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년인턴 6개월 이상 수료자	서류전형 2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년인턴 6개월 이상 수료자 중 우수청년인턴	서류전형 3점

- 입사지원 단계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해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하며, 중복 적용 불가함.

자격증 가산점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 1급	서류전형 2점
	한국사능력검정 2급	서류전형 1점
국어능력	국어능력인증 1급, KBS한국어능력 1급/2+급, 한국실용글쓰기 1급	서류전형 2점
	국어능력인증 2급, KBS한국어능력 2-급, 한국실용글쓰기 2급	서류전형 1점
IT분야 및 사무행정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서류전형 2점
	컴퓨터활용능력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서류전형 1점

- 분야별 자격증 점수를 합산하되 최대 6점까지 인정되며, 동일 분야 내에서는 최고 등급 자격증 1개만 적용함.
-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3

전형 단계별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서류전형 단계

공통	입사지원서		
우대가산점 입력자	보훈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지역인재	최종학력증명서	
	경력단절여성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청년인턴	청년인턴수료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온라인 지원서 파일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으로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출신학교, 출신 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의 경력사항 정보 입력 단계에서의 근무기관명은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습니다.
- 경력·자격 기준일은 접수 마감일이며, 동일 기관이라도 1일 이상의 공백이 있다면 기간을 분리해서 작성합니다.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되나, 청년인턴 경력은 6개월 미만도 인정됩니다.
-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은 추후 증빙서류로 확인 가능한 사실에 한해 작성해야 하며, 증빙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단계

공통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 대학원 각 1부)		재학중일 경우 재학증명서
해당자	경력사항 입력자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자격사항 입력자	자격증	
	교육사항 입력자	성적증명서 또는 직업교육 이수증	
	남성 지원자	병적증명서	
	그 외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제출 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유효기간이 명시된 서류는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이내 발급한 건만 인정합니다.
- 교육 및 자격사항 등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최종 이수한 건에 대하여만 인정합니다.

- 경력증명서는 근무 기간, 담당업무, 주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경력을 증명합니다.
- 지원 분야와 무관한 경력이나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거 근무지가 폐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과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경력은 위 명시된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이외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임용일

공통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통장사본	

4

기타 안내사항

□ 합격자 선정

- 채용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등 부정 채용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시 해당 지원자는 합격이 취소되고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이의신청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접수합니다. 다만, 채용 절차와 무관한 문의나 개인정보·지식재산권 침해 등 타 법령 저촉 및 처리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답변하지 않습니다.

□ 예비합격자 제도

-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로 인한 합격 취소,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후 14일 이내에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180일이 지난 이후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관련 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채용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02-6461-4759)